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10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안상훈 · 임종득 · 박정하
안철수 · 한지아 · 최은석
김승수 · 이종배 · 송석준
김성원 · 서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등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인 전기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은 물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임.

특히 전기차 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를 빠른 점유율 확대, 이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고율 관세 부과,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및 자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등의 세제혜택 등으로 국내 생산물량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신규 투자가 해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기존의 국내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생산 확대를 국내에서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단순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투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6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국내생산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2항에 따른 적격품목(이하 이 절에서 “적격품목”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품목 판매량에 제3항에 따른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산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한 것

나. 적격품목 생산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

족할 것

다.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닐 것

2. 판매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할 것

나. 적격품목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다만, 공급된 적격품목이 공급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적격품목이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라. 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마. 판매된 적격품목이 중고품이 아닐 것

② 적격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및 전기자동차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1. 녹색전환 및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2.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3.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또는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품목이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지역별 비율
가. 수도권[우대지역(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및 경제·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우대지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10

1) 수도권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광역시(우대지역은 제외한다)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30

1) 비수도권 광역시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일반지역

라. 비수도권 우대지역: 100분의 150

3.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④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제1항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총금액을 뺀 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하는 내국인은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생산량, 판매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적격품목 생산과 관련된 비용의 범위,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생산 지역별 공제액의 계산, 적격품목이 다른 적격품목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경우의 공제 적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6(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 ① 내국인이 제100조의35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24조에 따른 공제(이하 이 조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제100조의35에 따른 공제를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내국인은 실제로 공제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04조의14”를 “제100조의35, 제104조의14”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생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절의6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u> <u>조세특례</u>
<u><신 설></u>	<u>제100조의35(국내 생산세액공제)</u> <u>①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u> <u>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2항</u> <u>에 따른 적격품목(이하 이 절</u> <u>에서 “적격품목”이라 한다)을</u> <u>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u> <u>족하여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u> <u>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u> <u>품목 판매량에 제3항에 따른</u> <u>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적</u> <u>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u> <u>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u> <u>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u> <u>서 공제한다.</u> <u>1. 생산 요건</u> <u>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u> <u>한 것</u> <u>나. 적격품목 생산에 중요하</u> <u>고 본질적인 공정의 국내</u> <u>수행 여부, 적격품목 생산</u> <u>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u>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
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
은 자산이 아닐 것

2. 판매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
할 것

나. 적격품목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다만, 공급된
적격품목이 공급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적격품목이 생산된 과세
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
에 판매될 것

라. 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
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영
리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
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할 것

마. 판매된 적격품목이 중고
품이 아닐 것

② 적격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
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
지능로봇 부품 및 전기자동차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1. 녹색전환 및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
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2.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유지
·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3.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
대적으로 크며, 국내 시장수
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

③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제1호
의 금액에 제2호 또는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품목이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지역별 비율

가. 수도권[우대지역(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및 경제·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우대지역”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10

1) 수도권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광역시(우대지역은 제외한다)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00분의 130

1) 비수도권 광역시 중 우대지역

2) 비수도권 일반지역

라. 비수도권 우대지역: 100분의 150

3.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④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제1항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총금액을 뺀 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하는 내국인은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생산량, 판매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적격품목 생산과 관련된 비용의 범위,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생산 지역별 공제액의 계산, 적격품목이 다른 적격품목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경우의 공제 적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6(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 ① 내국인이 제100조의35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24조에 따른 공제(이하 이 조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생략)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45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제100조의35에 따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내국인은 실제로 공제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항·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 ⑪ (생략)

제100조의35, 제104조의14-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 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② ~ ④ (생략)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① -----

-----제99조의1

2, 제100조의35-----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3. -----

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
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
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
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
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
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
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
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생략)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
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
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
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
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
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제99조의12, 제100조의35

4. (현행과 같음)

②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3. -----

제99조의12, 제1
00조의35-----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for handwriting practice. It features ten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venly spaced from top to bottom. Each set consists of a single dashed line intended for tracing or writing practice. The lines are light gray and extend across the full width of the page.

(2) -----

제99조의12, 제100조의35-----
